

의안번호	제 344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종필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3년 6월 30일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4
----------	-----

발의연월일 : 2023년 6월 30일
발의자 : 김종필, 이종갑, 이동우,
김호경, 박지현,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바, 교통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에 맞게 일부 변속차로 최소 확보 길이를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개정

- 2. 가.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의 경우 “20대 이하”를 “5대 이하”와 “6대 이상 20대 이하”로 세분하여 완화된 기준을 신설

나. 부정확한 법령명을 개정(안 제3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도로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집행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장·숙박시설· 업무시설·근린생활 시설 및 기타시설	5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12m)			
	6대 이상 2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 범위)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u>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u>」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p> <p>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u>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집행계획</u>(이하 “<u>집행계획</u>”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제3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u>」----- ----- ----- -----</p> <p>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 ----- ----- ----- ----- ----- ----- ----- 단계 <u>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u>----- ----- ----- ----- -----</p>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관계법령

□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21. 8. 27.>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흙쌓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0. 9. 15.]